

국도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4. 1



국 토 교 통 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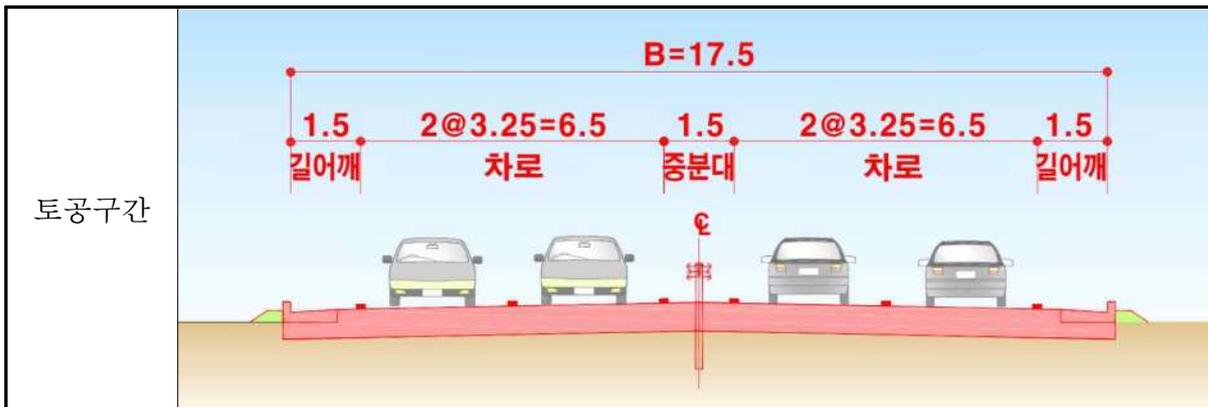
- 본 계획은 국도37호선의 도로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하여 도로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2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국도37호선 여주 대신 ~ 양평 개군 도로건설공사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 계획수립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승인 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협의 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계획 규모 : L = 11.76km, B = 17.5m(2차로→4차로 확장), 설계속도 = 70km/h

〈표 1-1〉 횡단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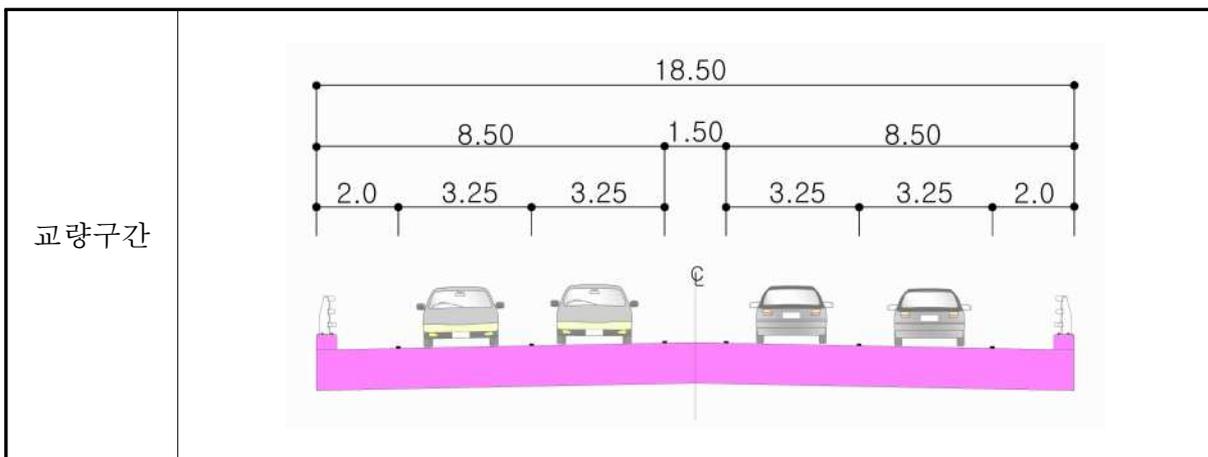
구분	제원(m)	비고
총 폭원	17.5	4차로
차로	13.0	3.25 × 4
중앙분리대	1.5	-
길어깨	3.0	1.50 × 2



(그림 1-1) 표준횡단면도(토공구간)

〈표 1-2〉 교량계획

구 분		연 장(m)	폭 원(m)	비 고
1	보통2교	8.0	27.75	보통천(소하천) 횡단
2	한새울2교	12.0	27.75	한새울천(소하천) 횡단
3	당남3교	11.0	18.5	당남천(소하천) 횡단
4	천서교	45.0	9.5	신내천(지방하천) 횡단
5	새터2교	10.0	18.5	새터천(소하천) 횡단
6	석장교	15.0	18.5	석장천(소하천) 횡단
합 계		L=101m/6개소		



(그림 1-2) 표준횡단면도(교량구간)



### 1.3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임

〈표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다.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 1.3.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임

〈표 1-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 사업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 구역의 결정 전
· 계획노선 연장 : 11.76km(2차로→4차로 확장)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 1.4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본 계획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표 1-5〉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p>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li> <li>2. 토지이용구상안</li> <li>3. 대안</li> <li>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li> </ol> <p>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li> <li>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li> <li>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li> </ol>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 1.5 추진경위 및 계획

### 1.5.1 계획의 추진경위

- 2006. 07. :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2021. 11. : 2021년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경기도지역) 완료
- 2022.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5.2 향후 계획

- 2024. 01.~02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24.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24. 02.~0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024.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에 따라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 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본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 증점적 영향이 예상되는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구 분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관리방안
대기환경	대기질	공사시 및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M-10 : 100<math>\mu</math>g/m<sup>3</sup></li> <li>· PM-2.5 : 35<math>\mu</math>g/m<sup>3</sup></li> <li>· NO<sub>2</sub> : 0.06ppm</li> </ul> </li> </ul> </li> </ul>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수환경	수질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임시침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유물질(BOD, SS) : 25mg/L</li> </ul> </li> </ul> </li> <li>○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li> </ul> </li> </ul>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토지환경	토양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li> </ul> </li> </ul>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생활환경	소음·진동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소음·진동규제기준</li> </ul> </li> <li>○ 학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교사 내) 소음기준 준수</li> <li>· 소음 : 55dB(A) 이하</li> </ul> </li> </ul>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환경기준 준수</li> </ul> </li> <li>○ 소음·진동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li> </ul> </li> <li>○ 학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교사 내) 소음기준 준수</li> <li>· 소음 : 55dB(A) 이하</li> </ul> </li> </ul>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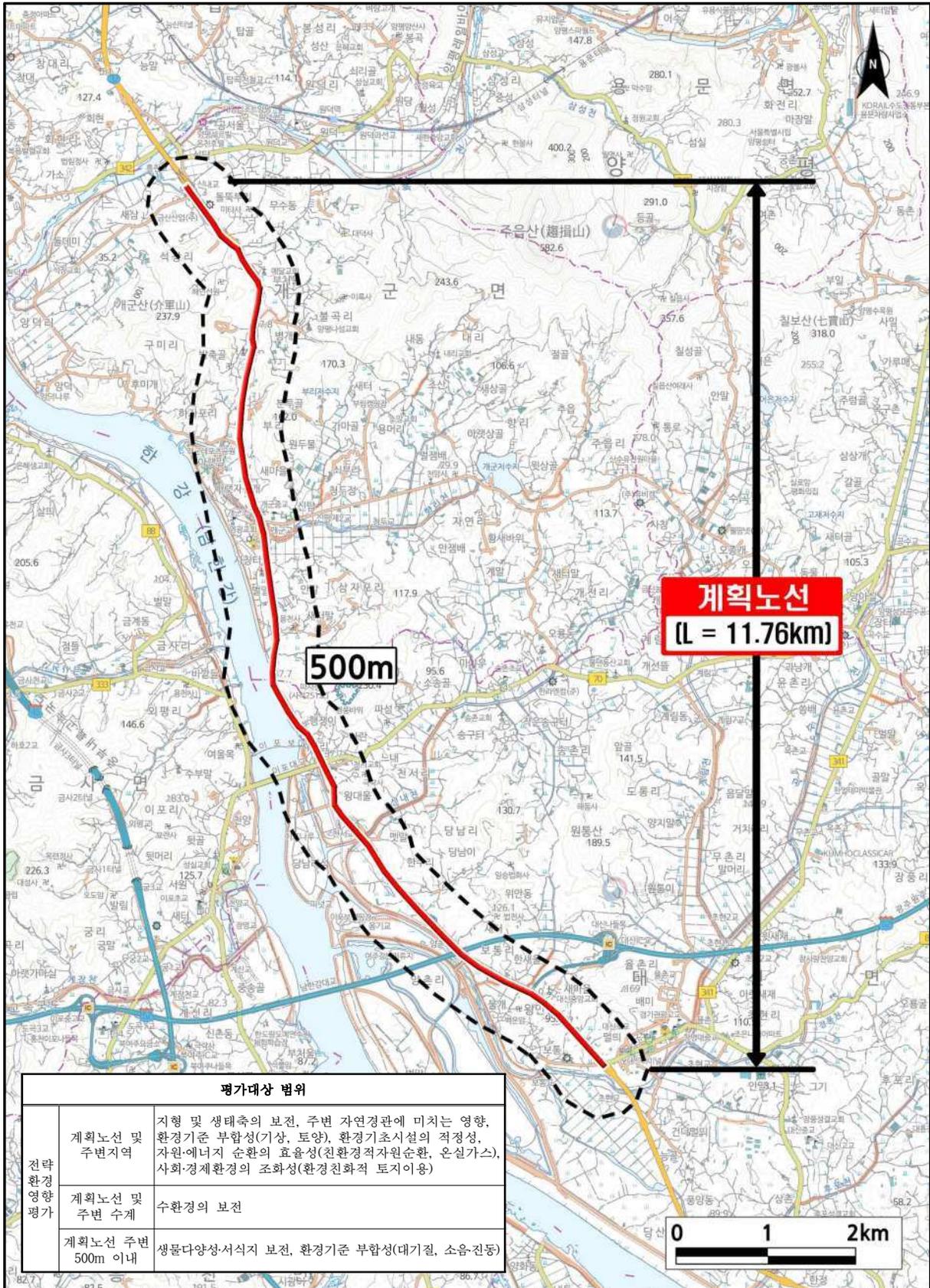
### 제3장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 환경부」 등 관련 규정 및 자료를 이용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적 입지 타당성 및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	대상 범위	비 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식생 및 동·식물상 변화 예상	계획노선 주변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공사시 깎기·쌓기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 예상 ◦교량설치에 따른 지형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 발생 예상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 합 성	기 상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노선 인근 기상대 (최근 10년간)	-
		대 기 질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 영향예상 ◦운영시 이동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영향예상	계획노선 주변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운반차량, 장비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 예상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예상	계획노선 주변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존재 여부	계획노선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및 연계처리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발생 예상	계획노선	공사시
		온실가스	◦공사시 장비가동 및 자재 투입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이동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예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편입 및 토지이용 변화 예상	계획노선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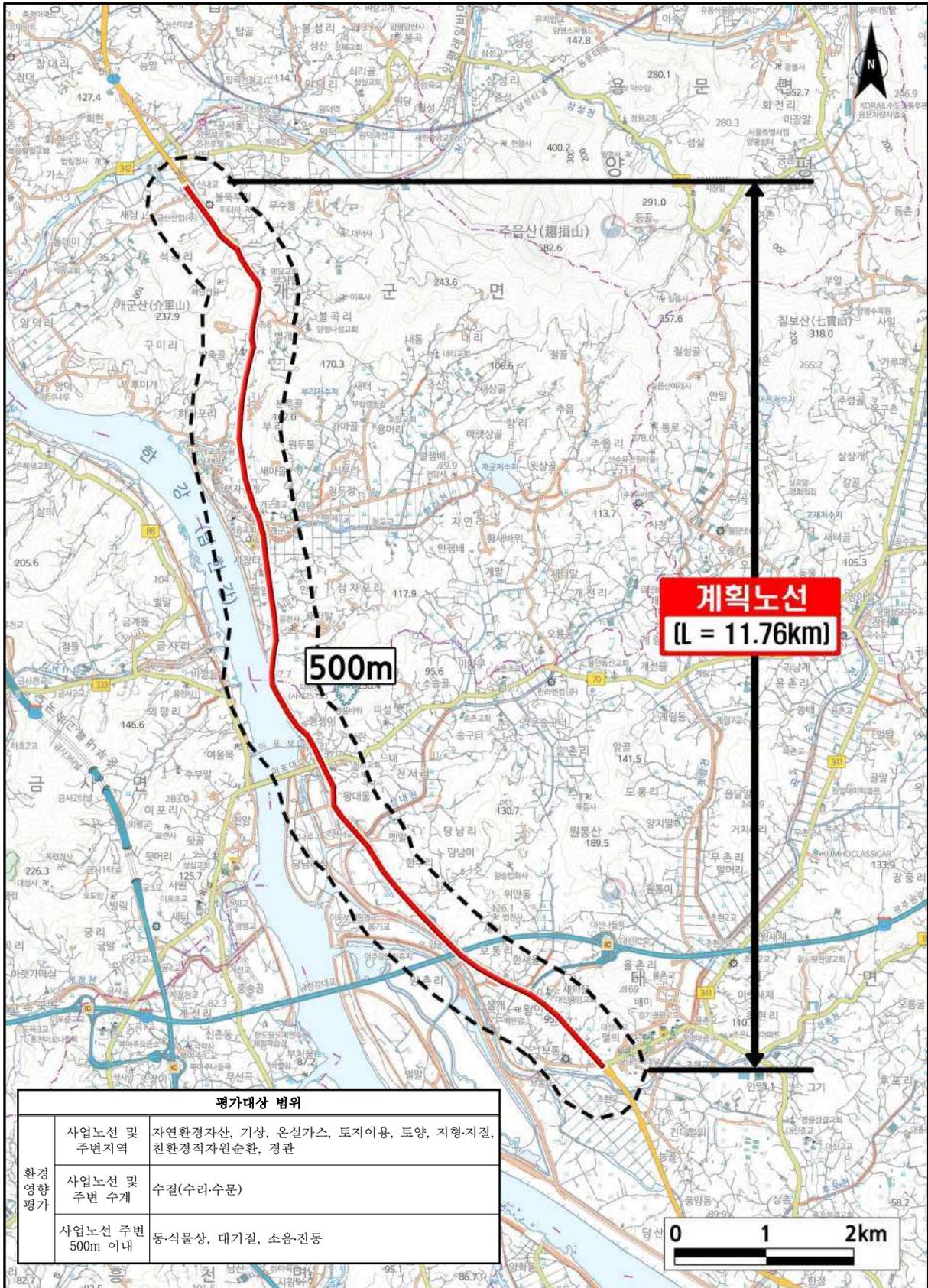
(그림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 3.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 환경부」 등 관련 규정 및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입지 타당성 및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항목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3-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	대상 범위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 및 동·식물상 변화 예상	사업노선 주변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 현황 및 영향 검토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 환경	기 상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노선 인근 기상대 (최근 10년간)	-
	대 기 질	○공사시 운반차량, 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운영시 이동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및 영향예상	사업노선 주변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장비가동 및 자재 투입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이동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예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공사 인력에 의한 오수 발생 예상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변화	사업노선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편입 및 토지이용 변화 예상	사업노선	운영시
	토 양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존재 여부	사업노선	공사시
	지형·지질	○공사시 깎기·쌓기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 예상 ○교량설치에 따른 지형변화	사업노선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발생 예상	사업노선	공사시
	소음·진동	○공사시 운반차량, 장비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 예상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예상	사업노선 주변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경관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예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그림 3-2) 환경영향평가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 제4장 대안의 설정

### 4.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4.1.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 가. 관련규정 검토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2023.04.13.)』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23.02, 환경부)』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나.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 “대안” 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표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선정
수단·방법	○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선정

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 환경부

## 4.2 대안별 비교·검토

### 4.2.1 계획비교

-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은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 실시 결과, 대안1(계획 수립시(Action))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종류	계획 수립시(Action)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하여 확장(2차로→4차로)하는 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장 없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li> </ul>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37호선의 용량 증대를 통한 지정체 해소</li> <li>○ 국도37호선 주변도로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li> <li>○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미수립시 현 상태의 환경질 및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li> <li>○ 노선 확장을 위한 비용 발생이 없음</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일시적인 환경영향 예상 -비산먼지 발생, 인근 하천에 부유토사 유입 등에 따른 하천오염,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등</li> <li>○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및 소음 발생량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37호선으로 잦은 지정체가 발생하는 추세이나 도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해 교통량 증가로 지속적인 노선 확장에 대한 민원요구 증가</li> <li>○ 국도37호선 주변도로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처결여</li> </ul>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시 일부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대상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이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li> <li>○ 계획시행을 통해 주변도로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인 대처,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할 수 있음</li> </ul>	
선정안	◎	-

### 4.2.2 입지 및 토지이용 비교

- 계획노선의 선형을 입지 및 토지이용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비교 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 입지 및 토지이용 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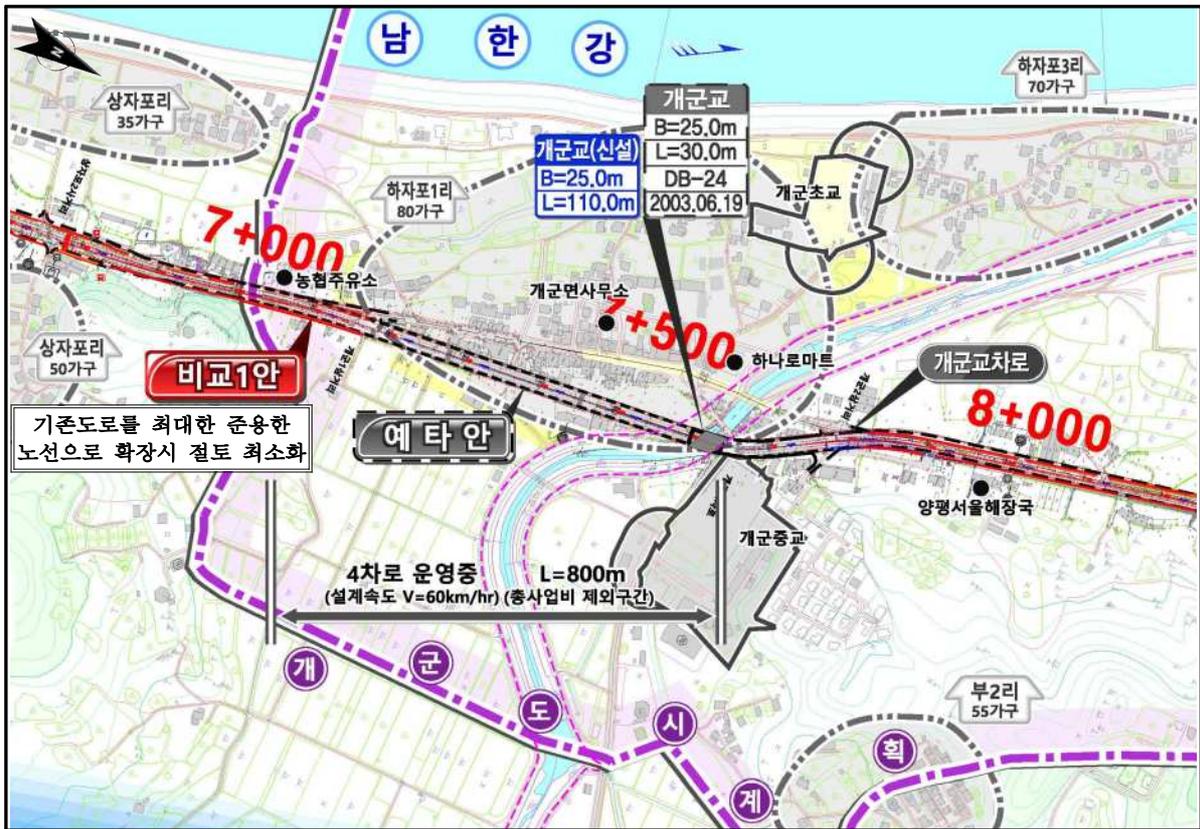
구 분		예비타당성안	비교1안	비교2안
노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및 상업시설을 미 고려한 확장계획</li> <li>•남한강 인접구간 하천구역 일부 저축</li> <li>•정지시거 기준 미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및 상업시설을 고려한 확장계획</li> <li>•남한강 인접구간 하천구역 저축 최소화</li> <li>•정지시거 기준을 반영한 평면선형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및 상업시설을 고려한 확장계획</li> <li>•남한강 인접구간 하천구역 미저축</li> <li>•정지시거 기준을 반영한 평면선형계획</li> </ul>
연 장		L=11.76km(공용구간0.8km)	L=11.76km(공용구간0.8km)	L=11.76km(공용구간0.8km)
규모	구조물	•교량 : 3개소 / 135m (신설 : 2/105m, 기존유용 : 1/30m)	•교량 : 7개소 / 131m (신설 : 6/101m, 기존유용 : 1/30m)	•교량 : 7개소 / 131m (신설 : 6/101m, 기존유용 : 1/30m)
특성	사회·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37호선 확장으로 국도 기능 강화</li> <li>•마을 및 상업시설을 미고려한 노선으로 민원 다수 발생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37호선 확장으로 국도 기능 강화</li> <li>•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li> <li>•마을 및 상업시설을 고려한 노선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37호선 확장으로 국도 기능 강화</li> <li>•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li> <li>•마을 및 상업시설을 고려한 노선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li> </ul>
	기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을 미 반영한 계획으로 신규 교량 설치발생</li> <li>•정지시거를 미고려한 평면선형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을 반영한 종단 및 교량 설치계획 - 천서사거리, 주민보호구역, 개군도시계획 등 4.5km구간 설계속도 60km/h 하향으로 절토부 최소화</li> <li>•정지시거를 고려한 평면선형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을 반영한 종단 및 교량 설치계획 - 기존 4차로 공용구간(0.8km) 제외 전 구간 70km/h 적용으로 절토부 과다 발생</li> <li>•정지시거를 고려한 평면선형 계획</li> </ul>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안은 하천 정비계획 미반영, 정지시거 기준 미고려 등 기하구조 기준에 미흡,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하며, 천서사거리 등 상가 밀집지역 상가건물 및 주차장 부지저축 과다로 민원발생 예상됨</li> <li>○ 비교2안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노선계획으로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였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함</li> <li>○ 비교1안은 4.5km구간 설계속도를 60km/h로 하향하여 절토부와 편입면적을 최소화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함</li> <li>○ 따라서, 기존도로를 활용한 계획수립, 상가 밀집지역 지장물 편입 최소화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li> </ul>		
선 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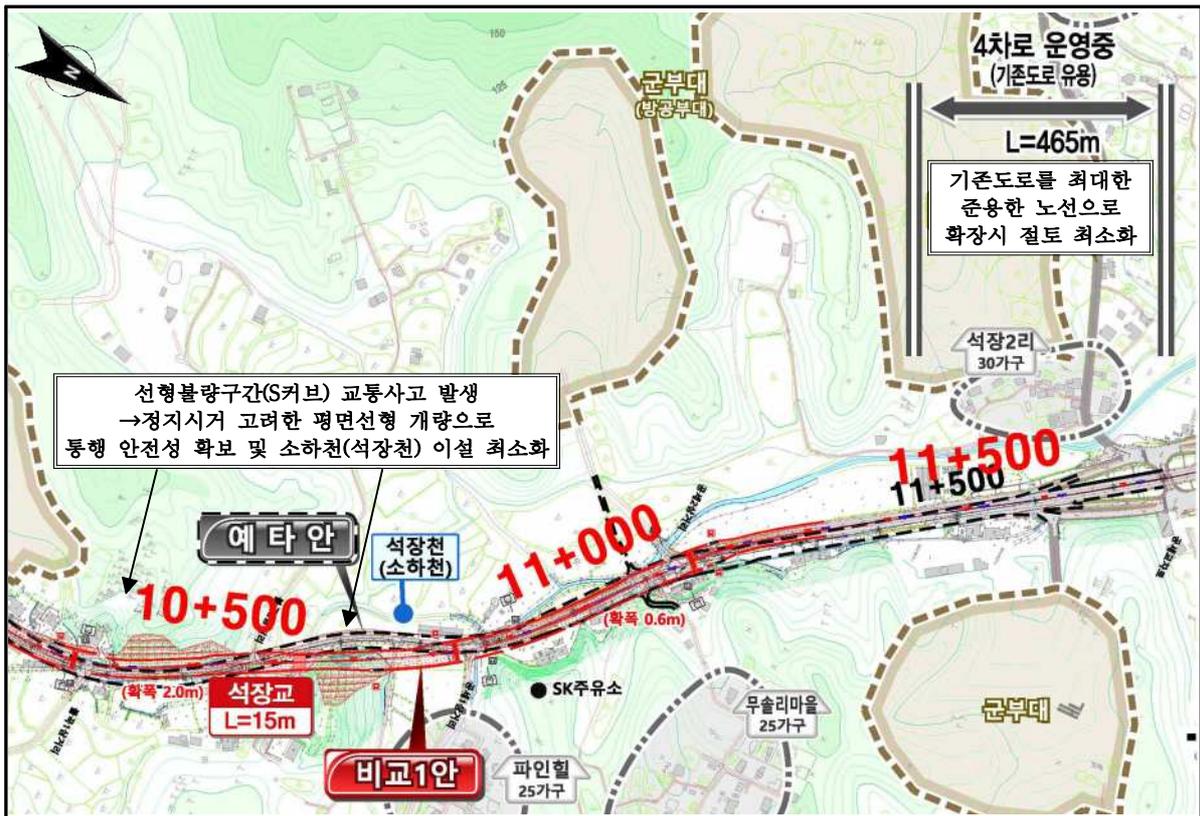
(그림 4-1) 천서사거리 상가 밀집지역 통과구간 비교(STA.4+500~4+900)



(그림 4-2) 남한강 인접 통과구간 비교(STA.5+000~6+500)



(그림 4-3) 개군도시계획구간 비교(STA.7+000~8+500)



(그림 4-4) 중점부 선형불량구간 비교(STA.10+000~11+670)

# 국도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원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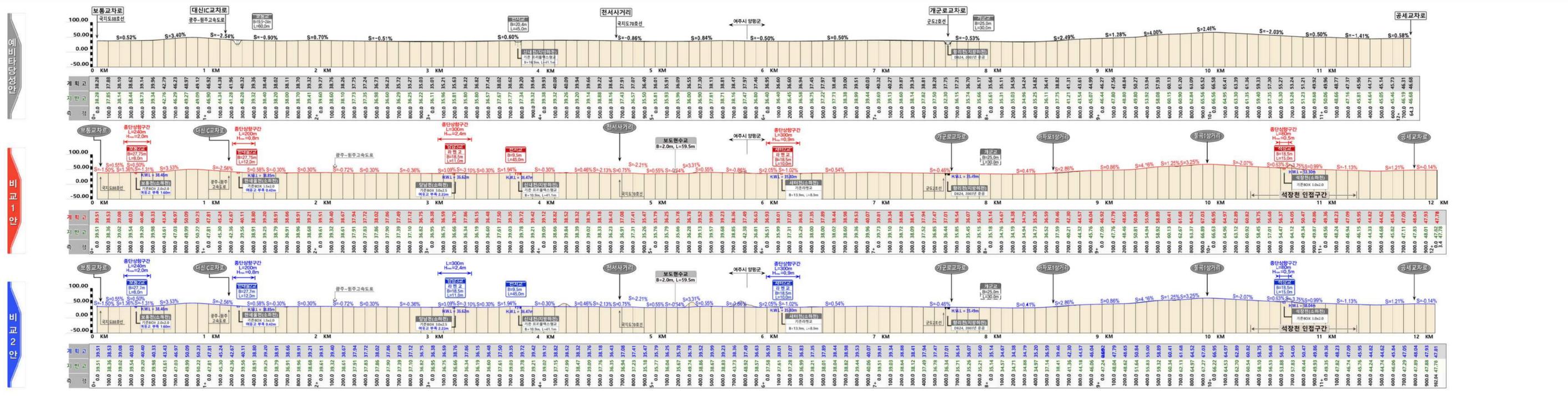
## 비교노선도

S=1:20,000



## 종단면도

H=1:20,000  
V=1: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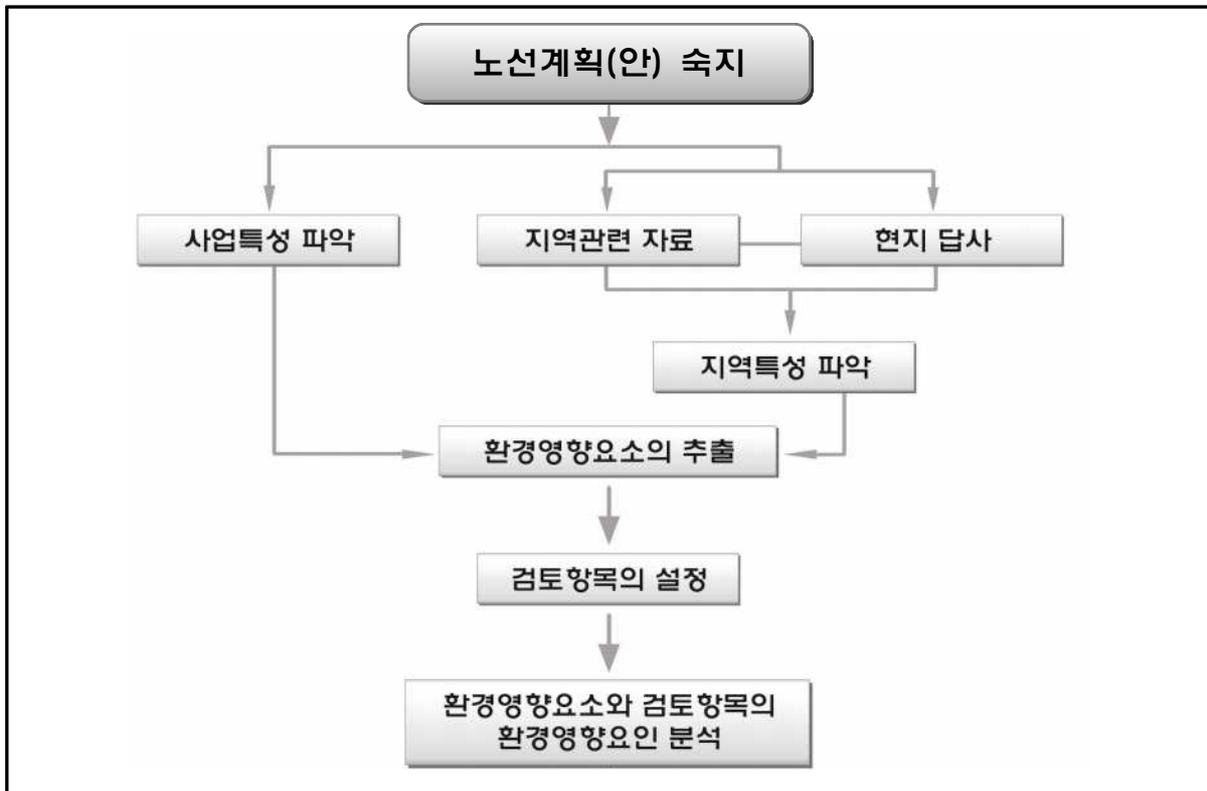


## 제5장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5.1 평가항목의 선정

#### 5.1.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하며, 본 개발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계획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와 같이 추출하였음
-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요소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추출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요소는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분야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함



(그림 5-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5-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흐름도

개발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적정성</li> <li>○ 입지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의 보전</li> <li>- 생활환경의 안정성</li> <li>-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포함), 소음·진동 발생</li> <li>○ 토사유출, 비점오염원 등에 따른 수계 영향</li> <li>○ 지형변화 발생 및 토양오염</li> <li>○ 건설폐기물 발생</li> <li>○ 경관변화 등 생활환경 영향</li> </ul>

### 5.1.2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5-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

구 분	선정결과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중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중점	○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예상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 변화 예상 ○ 각종 보호종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중점	○ 지형·지질 변화 예상 및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중점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현황 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영향예상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중점	○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현황 조사 ○ 대기질 변화,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및 소음·진동 등 영향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일반	○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가능여부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중점	○ 폐기물 발생량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중점	○ 토지이용 변화 예상	

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등 참고하여 설정

### 5.1.3 환경영향평가

#### 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시와 운영시를 구분하여 자연 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5-3〉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분	공 사 시		운 영 시	
환경영향요소	○ 도로 노선공사	○ 지형변형, 수목의 벌채, 깎기 및 쌓기, 굴착 및 발파, 토지점용	○ 시설물 이용	○ 도로, 교량, 배수로, 통로 등
	○ 건설자재	○ 골재, 석재의 확보 및 운반, 건설기자재 운반 및 가동, 토사이동	○ 차량통행	○ 배기가스 발생, 소음발생
	○ 시설공사	○ 교량 공사, 배수 및 통로박스 공사, 터널 공사, 포장 공사, 공사인부 투입	-	-

#### 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부호와 숫자 6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앞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들의 상호 관련성과 크기를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하였음

〈표 5-4〉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	개발되면 상당히 좋음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함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임	◆	악영향이 다소 있음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효과는 미약	●	악영향이 큼

<표 5-5>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환경 항목		자연생태 환경		대기환경			수 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공사시	자연형질변경	지형변화	▲	▲				▲	▲	▲	▲			▲
		산림벌채	◆	▲							▲	▲		▲
		사면발생						◆			◆			◆
		토지점용	▲	▲					▲					
	토공 및 시설물 공사	건설장비 운영	▲			◆	◆			▲		▲	◆	
		토사이동				◆		▲			◆			
		토공작업				◆		◆					◆	
		굴착 및 발파				▲	▲	◆					◆	
		폐기물발생								▲		▲		
		공사인부 투입						▲				▲		
	운영시	도로 이용	배기가스 발생				▲	◆						
			도로소음 발생	▲									◆	

## 5.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5.2.1 전략환경영향평가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영향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수립

〈표 5-6〉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및 예측방법(1/3)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 방법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 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 탐문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계획노선 주변 500m 기준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지형형상 등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영향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 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근경, 중경, 원경)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검토
보전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 및 지하수질 현황, 오염원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수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현황 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수질변화 검토

〈표 5-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및 예측방법(2/3)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 방법
		조 사 범 위	조사내용, 범위, 방법 등	
생활 환경 의 안정 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li> <li>-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된 항목에 대한 현황농도 실측</li> <li>- 인근기상대의 기상현황 파악</li> <li>- 영향예상지역 조사</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등</li> </ul> </li> <li>◦조사방법 : 현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 대기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시행 시 미치는 영향 예측</li> <li>-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영향예측</li> <li>- 운영시 이동차량에 따른 오염물질 영향예측</li> </ul>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주변 소음도 및 진동레벨 현황 실측</li> <li>- 정온시설 조사</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등</li> </ul> </li> <li>◦조사방법 : 현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li> <li>- 소음·진동 예측식 이용</li> <li>-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도로 소음 영향 예측</li> </ul>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내 임야 및 밭 등의 토양질 현황 실측</li> <li>-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존재여부 파악</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예측</li> <li>◦폐유 및 지장물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파악 및 대책 수립</li> </ul>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 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현황 검토 등</li> </ul> </li> <li>◦기존자료 및 현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주변 오염원 처리계획 수립</li> </ul>	

〈표 5-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및 예측방법(3/3)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 방법
		조 사 범 위	조사내용, 범위, 방법 등	
생활 환경의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현황</li> <li>-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li> <li>- 온실가스 배출현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li> <li>-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여주시 및 양평군</li> </ul> </li> <li>◦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예측</li> <li>◦온실가스 배출 변화 예측</li> </ul>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별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파악</li> <li>◦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li> </ul>

### 5.2.2 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아래와 같음

〈표 5-9〉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1/3)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현황조사	예측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노선 주변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자연도 현황(식생 현황, 생태자연도 분포, 육상 및 육수 동·식물 등)</li> <li>- 법정보호종 출현 현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주변 500m 이내</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기존자료 조사 및 탐문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현황을 조사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li> </ul>
	자연환경 자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문헌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li> </ul>
대기 환경	기상	사업노선 인근 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 활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인근 기상대</li> </ul> </li> <li>○조사방법 : 문헌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인근 기상대 10년간 통계자료) 활용</li> </ul>
	대기 질	사업노선 주변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li> <li>-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된 항목에 대한 현황농도 실측</li> <li>- 인근기상대의 기상현황 파악</li> <li>- 영향예상지역 조사</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주변 주거지역 등</li> </ul> </li> <li>○조사방법 : 현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노선 주변 대기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 시 미치는 영향을 대기질 확산모델링(AERMOD)을 수행하여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영향예측</li> <li>- 운영시 이동차량에 따른 오염물질 영향예측</li> </ul> </li> </ul>

〈표 5-10〉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2/3)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현황조사	예측방법	
대기 환경	온실가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및 주변 온실가스 배출현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장비 가동 및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li> <li>◦운영시 배기가스 발생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li> </ul>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수계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 수질현황 농도</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주변 수계</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중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 수계에 미치는 토사유출 영향 예측</li> <li>◦수질오염총량검토</li> <li>◦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예측</li> </ul>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별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li>- 여주시, 양평군</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상의 변화 파악</li> <li>◦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노선 및 도로시설물 계획 수립 검토</li> </ul>
토지 환경	토 양	사업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내 임야 및 밭 등의 토양질 현황 실측</li> <li>-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존재여부 파악</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예측</li> <li>◦폐유 및 지장물 철거로 인한 토양 오염 영향 파악 및 대책 수립</li> </ul>	
	지형·지질	사업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맥현황 등</li> </ul> </li> <li>◦조사범위 : 사업노선</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깎기쌓기로 인한 지형의 변화정도 평가</li> <li>◦토공계획 및 시설물 등 검토</li> <li>◦입지에 대한 표고·경사 분석</li> </ul>	

<표 5-1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3/3)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현황조사	예측방법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현황</li> <li>-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li>- 여주시 및 양평군</li> </ul> </li> <li>◦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예측</li> <li>- 지장물 철거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li> <li>-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li> <li>- 장비투입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 발생</li> </ul>
	소음·진동	사업노선 주변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주변 소음도 및 진동레벨 현황 실측</li> <li>- 정온시설 조사</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주변 주거지역 등의 정온시설</li> </ul> </li> <li>◦조사방법 : 현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li> <li>- 소음·진동 예측식 이용</li> <li>-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도로 소음 영향 예측</li> </ul>
	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경관요소 분포현황 등</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지형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li> <li>◦절·성토 및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측</li> </ul>

### 5.3 환경현황 현지조사 계획(안)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 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음

<표 5-1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현황 현지조사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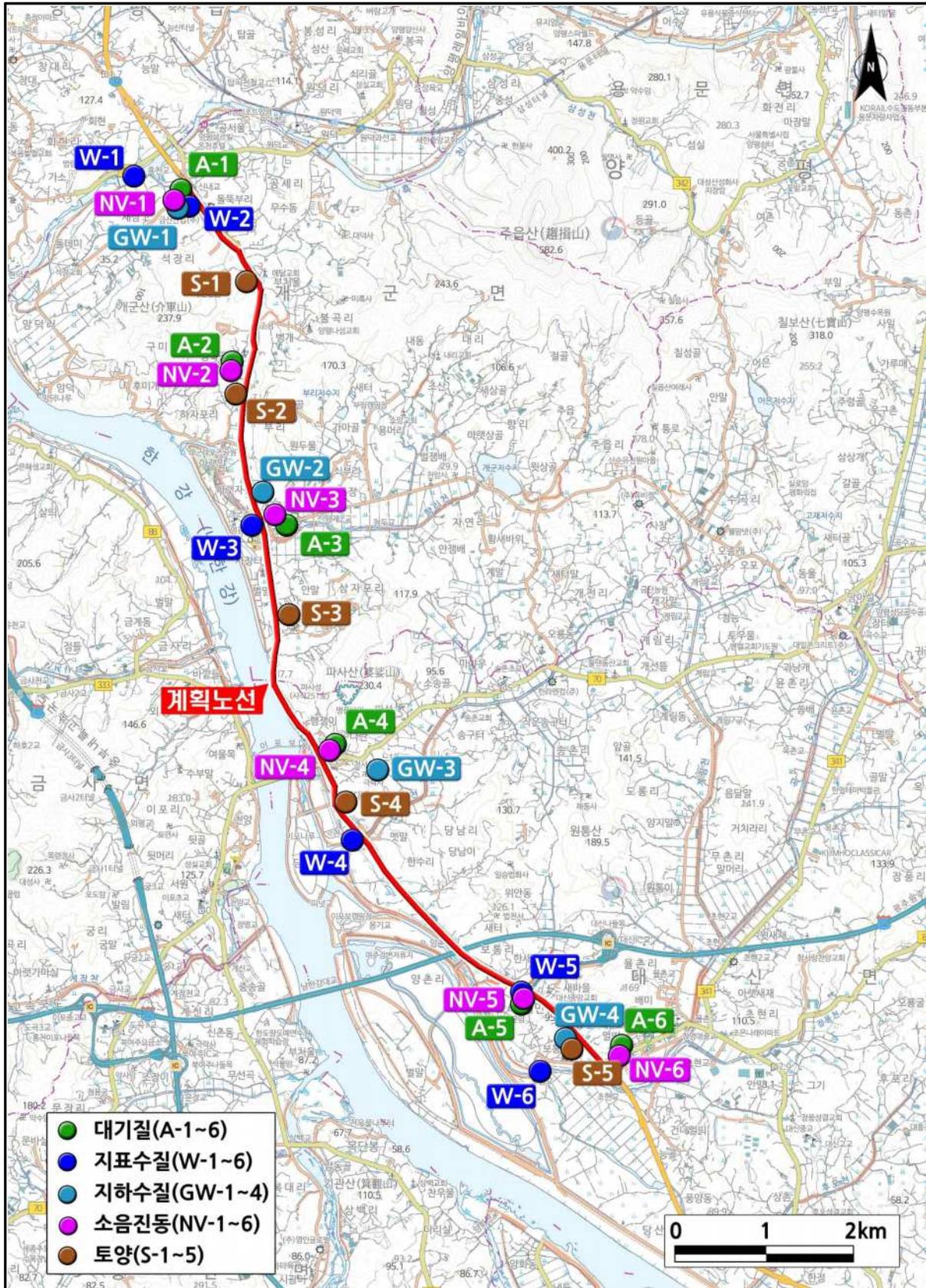
항 목	조 사 항 목	지점수	조사횟수
대기질	○ PM-10, PM-2.5, NO <sub>2</sub> , SO <sub>2</sub> , CO, O <sub>3</sub> , Pb, C <sub>6</sub> H <sub>6</sub> 8개 항목	6지점	4회
지표수질	○ pH, BOD, COD, SS, DO, T-N, T-P,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sup>6+</sup> , ABS, C <sub>6</sub> H <sub>6</sub> , 디클로로메탄, PCE, TOC 21개 항목	6지점	4회
지하수질	○ pH, CN, 페놀, As, Hg, TCE, PCE, Cd, Pb, Cr, Cl <sup>-</sup> , NO <sub>3</sub> -N, 총대장균군수,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0개 항목	4지점	4회
토 양	○ Cd, Cu, As, Hg, Pb, Cr <sup>6+</sup> ,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phenol), BTEX, TPH, TCE, PCE 17항목	5지점	4회
소음·진동	○ 소음도(주간4회 야간2회), 진동도(주간2회 야간1회)	6지점	4회
동·식물상	○ 육상동·식물상, 육수생물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4회

주) 계절별 조사 시행 예정

〈표 5-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지점(안)

구 분		주 소	비 고
대기질	A - 1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3-1	측사
	A - 2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51-1	마을회관
	A - 3	양평군 개군면 부리 453-1	개군중학교
	A - 4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624-1	복지회관
	A - 5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254-1	마을회관 인근
	A - 6	여주시 대신면 울촌리 산 40	대신체육공원
지표수질	W - 1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559	흑천
	W - 2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942	소하천
	W - 3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15-10	향리천
	W - 4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504-5	신내천
	W - 5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526	소하천
	W - 6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보통교)	곡수천
지하수질	GW - 1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3-1	측사
	GW - 2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12-5	가옥
	GW - 3	여주시 대신면 느네길 26	가옥
	GW - 4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27	주유소
소음·진동	NV - 1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3-6	가옥
	NV - 2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51-1	마을회관
	NV - 3	양평군 개군면 부리 453-1	개군중학교
	NV - 4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624-1	복지회관
	NV - 5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254-1	마을회관 인근
	NV - 6	여주시 대신면 울촌리 산 40	대신체육공원
토양	S - 1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산47	임야
	S - 2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88-1	답
	S - 3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314-1	답
	S - 4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44-1	임야
	S - 5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26-1	전

주) 조사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그림 5-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도(안)

##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6.1 전략환경영향평가

#### 6.1.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협의회에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6.1.2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1. 초안 공고 및 공람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공람할 계획임
- 공고시점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고방법 : 전국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공고기간 : 20일~40일 범위에서 공람(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여주시, 양평군의 1개소 이상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추후 협의 후 결정)

## 2.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시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
- 개최공고 : 초안 공고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장소 : 설명회 개최 장소는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과 협의 후 결정

## 3. 주민설명회 생략

### 가. 생략근거

-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할 계획임

### 나. 후속조치

-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경우 주민설명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실시하겠음

#### 1) 신문공고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2) 정보통신망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3) 추가 의견 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소에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하여 본 계획의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생략(환경영향평가)

- 본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본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동시에 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제2항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p>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li> <li>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li> <li>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li> </ol>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 6.3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생략

-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의 1~4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	절 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
<p>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p> <p>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li> <li>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li> </o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협의요청서류 작성 사업자(증명서류 포함)</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절차생략에 관한 협의 요청 사업자→승인기관 장→협의기관 장</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요청내용 검토 협의기관 장</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협의결과 통보 (협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기관 장→승인기관 장→사업자</div> </div>

##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3, 4, 5, 9, 10조
- 주관행정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양평군,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4. 01. 05 ~ 2024. 01. 19
- 결정사항 :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

〈표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분		소속	성명
위원장	계획수립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장○○
위원	계획수립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이○○
위원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위원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추천)	한국환경연구원(KED) 환경평가본부	주○○
위원	관계 행정기관	경기도 여주시 문화경제국 환경과	이○○
위원	관계 행정기관	경기도 양평군 환경과	홍○○
위원	민간전문가	(주)디에스이앤씨	송○○
위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
위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
위원	주민대표	대신면 보통3리	김○○
위원	주민대표	개군면이장협의회	남○○

##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별 심의의견

### 심의의견1-1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붙임2

####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도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도로건설공사)

#### □ 총괄 의견

- 본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보전목표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환경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2.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노선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영향평가 실시

##### 3. 토지이용 구상안

- 환경관련 현황 및 도로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구간의 경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 4. 대안

- 대안은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 [별표3]
- 입지비교에서 노선별 생태적·환경적(생태자연도 1등급지, 수변구역 등) 측면의 정량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계획노선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등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수질) 공사 및 운영 시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
-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소음·진동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심의의견1-2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7. 기타

- 문헌자료는 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 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
- 평가서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
-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 검토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조정이 될 수 있음

2024. 1. .

심의위원 :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견2 - 한국환경연구원(KED) 환경평가본부 주○○

심 의 의 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국도 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평가준비서]

□ 총 관 의 견

- 계획노선은 남한강 수변구역에 입지한 기존 국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남한강의 하천 훼손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대안 1과 대안 2의 노선계획 중 차별되는 구간 및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변구역에 미치는 영향, 지형 및 경관의 훼손 등의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수질 : 공사시 남한강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모든 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현황을 조사
  - 소음·대기질 : 기존 국도를 확장지역 주변의 정온시설의 현황 파악과 환경기준 초과 여부 예측
  - 폐기물 : 지장물 철거로 인한 석면 발생 현황 및 처리대책 마련
  - 토지이용 : 공사용 도로 등의 설치 계획 및 훼손 규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2024. 01 . 08.

심의위원 주

심의의견3-1 - 경기도 여주시 문화경제국 환경과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업명 : 국도37호선 여주 대신 ~ 양평 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오염부하의 누적영향을 포함하여 예측·평가하여야 함.
- 조성되는 도로건설공사 사업 부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도로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주변 경관의 변화를 최소화 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지역 환경계획, 경관계획 등 지역의 환경기준 및 시책 등과의 연관성 또는 부합여부를 검토할 것.
- 대상 지역의 공사 시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니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파사산(대신면 천서리)은 여주 파사성(사적 제251호)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 시 산림훼손 및 토공사로 인한 산림녹지경관 및 문화재 훼손이 발생 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임야와 농경지, 하천(남한강)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금번 도로 및 시설물 설치가 계획됨으로 인해 지형과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대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토지이용을 구상할 것.
- 사업계획노선의 생태자연도는 1, 2, 3등급 권역이며, 서측으로 인접하여 1등급 권역이 위치하고 주변 농경지와 임야, 하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사료되는 바, 생물다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산림의 과도한 훼손의 지양, 최대한의 녹지면적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각종 개별 법에 의한 조례 및 환경관련 조례와의 연관성 등 부합여부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
- 도로건설공사 시 공사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의 불편발생이 예상되는 바, 기존 도로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심의의견3-2 - 경기도 여주시 문화경제국 환경과 이○○

3. 대안

- 사업 시행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환경변화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시할 것
-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한 개발을 지양할 것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의 공간활용 계획과 해당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 여부 및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충분히 마련할 것
- 공사 시 주변 경관, 동식물, 대기질, 수질, 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것
-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 및 경제환경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주민공람, 설명회 등 관련 법에 의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위와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1. .

심의위원 환경과장 이 

심의의견4 - 경기도 양평군 환경과 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도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서 작성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수환경 보전목표 설정 시 양평군은 전지역이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이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오염총량 할당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 대상지역의 현황 및 환경영향 예측 시 기 설정된 대상지역 외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지역 조정 필요

3. 토지이용 구상안

사업시행 대상지역은 수변구역이 포함되고 인접한 지역에 양평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 시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을 최소화 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필요

4. 대안

계획 수립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 지형 및 경관 변화가 예상되고, 공사 시 장비 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하류 하천 수계에 부유물질 등이 발생 예상됨에 따라 자연 훼손 최소화 및 인근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사업시행 지역에 수변구역 및 양평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검토 필요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평가서에 적극 반영 필요

7. 기 타

의견 없음

2024. 1. 15 .

심의위원 : 홍 [redacted]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견5 - (주)디에스이앤씨 송○○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도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본 계획노선 주변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적정하며, 환경보전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함

2.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각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정함

3. 토지이용 구상안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훼손 최소화, 정온시설 환경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대안

대안별 기술적인 측면, 시공성 측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은 적정하게 설정하였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설명회는 현수막 설치, 지지체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계획노선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

7. 기 타

의견없음

2024. 1. 15.

심의위원 : 송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견6 -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도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건 계획은 주민 숙원사업인 국도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간 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천서사거리 양수장 일원의 도로가 생태1등급 남한강 호안에 인접하여 주변의 금사 습지 및 전복리 습지, 파사산의 야생 동식물 정온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구간을 통과하는 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마을 및 상업시설의 도로로 인한 단절에 유의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적정
2.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
3.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
4. 대안
  - 적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설명회 등 의견수렴 필요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2024. 1. 10.

심의위원 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견7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도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도로건설공사의 적정성 및 목적, 입지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이 충실히 강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목표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하다고 판단됨
3.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하다고 판단됨
4. 대안
  - 대안 선정시 검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구간의 지형 및 주변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지점선정, 예측조건, 모델에 사용되는 수치들은 산정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영향예측 및 결과는 저감방안 수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2가지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고, 최종 이행할 저감방안에 대한 선정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되어야 함
7. 기 타
  -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4. 1 . 11 .

심의위원 : 이 [ ] (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견8 - 대신면 보통3리 김○○

24 1월 15 09:26a

Woodoo

0318813270

p.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도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보전지역이 있는 수목의 보존이,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사에 비반영이 계획 없이, 복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임을 밝힘.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총괄의견 참조

2.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총괄의견 참조

3. 토지이용 구상안

적정량

4. 대안

도로의 선형설계를 위한 유역하천 선에서 안을 자세하게 검토 제시되었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적정량으로 생각됨 별도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쉬운 설명이 필요함, 구체적인 장치가 있게끔 해야 함

7. 기타

공사 중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야 함

2024. 1. 15.

심의위원 :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견9 - 개군면이장협의회 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도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양평 이미지와 어울리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도로 선형 계획 시 주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평가준비서 내용의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고려됨.
2.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 지역 적절
3. 토지이용 구상안
  - 불곡리 310-3번지 일원에 도로 편입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도로 선형 선정 시 주민 협의 필요
4. 대안
  - 다양한 대안검토 및 주민 협의를 통하여 대안 설정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 주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기 타
  - 해당없음

2024. 1 . 16 .

심의위원 : 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